

한.일 합동연구회 결과에 대한 공동기자 회견문 발표

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전(前) '중군위안부'의 인권회복과 보상 및 배상조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밀접하게 협력해 왔다. 한편, 일본정부는 8월 4일 제 2차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로 인해 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망이 열렸다.

이 기회에 지금까지의 한.일의 연구성과를 교환, 집약함과 동시에 진상해명을 위한 이후의 연구상의 문제의식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의견의 교환과 조정을 행하고, 보다 밀접한 연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9일 - 10일까지 합동연구회를 개최했다. 이 연구회에서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의 내용과 위안부 정책의 지휘 명령계통의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법적, 이론적 측면의 양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.

그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.

1. 연구회의 성과와 이후의 과제

1) 성 과

- 가. 육군중앙, 해군중앙의 감독, 또는 통제하에서 위안소의 설치,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, 그리고 위안소의 설치, 운영의 주체는 군이고, 업자가 행한 경우에도 그 역할은 종속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.
- 나. '중군위안부'의 징집, 연행시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연행도중에 있어서 강간이 이루어졌고, 또한 위안소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폭력에 의한 강제사역이 가해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.
- 다. '중군위안부' 제도는 공창제와는 달리 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제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. 그 제도하에서 중군위안부는 '성적 노예상태'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.
- 라. '중군위안부' 문제는 인도(人道)에 대한 죄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법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였으므로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그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.
- 마. 1965년 한일협약에서 제인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.

2) 논점 및 조사연구의 과제로서 남겨진 것

- 가. 조선반도에서 이루어졌던 노무동원과 위안부징집과의 관련, 공창제와의 관련,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와 위안업자에 의한 강제의 관련에 대해서 논의되었다. 이러한 점에 대한 해명은 이후의 과제이다.
- 나. 위안부의 전체규모의 추정, 아시아 각지의 위안소, 위안부의 실태, 패전후의 처리방식, 소위 노무위안부의 실태 등이 과제도 떠올랐다.
- 다. 현재의 국제적인 인권수준에 합당한 '중군위안부' 문제의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후의 과제이다.
- 라. '중군위안부'라고 하는 명칭의 적합성 문제가 논의되었고, 이후의 문제로 남겨졌다.
- 마. '위안부' 모집에 대한 조선총독부, 경찰자료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. 이것을 포함한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.

3) 이후의 연구회에 대해서

- 가. 이후에도 협력해서 조사연구를 진행시킬 것에 합의했다.
- 나. 12월에 제2회 합동연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, 2번의 연구회의 성과를 빠른 시기에 통합할 것에 합의했다.

(7월 24일
10월 26일 제2회)
3월 21일) ni point

4)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

- 가. 일본정부는 '중군위안부' 문제에 관한 정부보관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.
- 나. 일본정부는 민간연구자와 협력해서 진상해명에 노력할 것.
- 다. 일본정부는 '중군위안부' 문제에 관한 정부, 군 및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,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.
- 라. 일본정부는 '중군위안부' 제도를 전시에 행한 성적 노예제였다는 것을 인식하고,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정신적, 물질적 배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.
- 마. '중군위안부'의 존재가 아시아 전역에 퍼져있던 문제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관한 유엔 등의 동향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.

1993 년 8 월 10 일
한. 일 합 동 연 구 회